



China RoHS 2

2016년 1월 21일 China RoHS 법령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자정보제품(EIP)에서 전기전자제품(EEP)로 규제 대상 제품 군이 확대 되었습니다.

중국 내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포함된 부속품 대상으로 다음의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전기전자제품 사용 제한 물질 함유 허용량
2.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의 사용 라벨 표기

● 전기전자제품 사용 제한 물질 함유 허용량

제품의 생산, 설계, 판매 및 수입시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대상 제품은 분석 단위 분류에 따라 하기의 6대 유해 물질을 최대 허용 농도로 관리됩니다.

◆ 허용 농도 및 규제 물질

규제 물질	허용 농도 (PPM)
Cd	100
Pb	1,000
Hg	
Cr6*	
PBBs/PBDEs	

분류	정 의
EEP-A	균질재질
EEP-B	각 부품의 금속 도금 층
EEP-C	분리 불가능한 소형 부품 및 재료

전기전자제품(EEP)의 분류와 정의는 상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의 사용 라벨 표기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China RoHS 라벨 표준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환경보호사용기간* 또는 유해물질 비 포함에 대한 라벨을 표기해야 합니다.

◆ China RoHS 라벨

라벨	의 미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
	유해물질 함유 제품 환경보호사용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 가능 기간 이후 재활용 센터로 입고해야 하는 제품

*환경보호사용기간이란?

전기전자제품이 유해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해당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기간

China RoHS 라벨은 제품에 표기 되어야 하며 제품의 크기, 형태, 소재에 의해 직접 부착이 어려울 경우 제품 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 제품 설명서에 표기 시 종이 매뉴얼, 디스크, 형태 또는 포장재에 표기 가능해야 합니다.
- 회사 홈페이지에 라벨 관련 정보 공개 시, 공개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품 설명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 부품, 소재업체 또는 공급업체는 라벨 표기의 의무는 없으나 라벨 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 라벨은 확인이 쉽고, 구별이 가능하며, 제거가 어려워야 합니다.

Regional Contact

Gunpo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60
번길 3 인터텍빌딩(당정동)
Tel: +82 31 8069-3704~9
FAX: +82 2 567-8482

Daegu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E&C 이노비즈타워 9층 904호
Tel: +82 53 600-8646
FAX: +82 53 600-8645

Web: www.intertek.com
www.intertek.co.kr

E-mail:

rohs-team@intertek.com

인터텍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력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제품 및 브랜드가 세계에서 경쟁력과 품질을 향상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